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조정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798

발의연월일: 2024. 6. 21.

발 의 자:조정식・민병덕・정을호

백승아 · 정성호 · 부승찬

황운하 · 서미화 · 김성환

문진석 • 이기헌 • 염태영

김재원 · 황 희 · 이병진

윤종군 의원(16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가 시행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및 현황조사,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.

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정부가 집중 지원하고 있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부분은 빠져있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의 현황조사가 부족한 상황임.

이에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현황조사 및 분석·평가와 만족도 조사 대상에 창업중소기업을 별도로 추가하려는 것임(안 제20조의3제1 항제2호의2 및 제6호).

법률 제 호

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중소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의3제1항제2호의2 및 제6호 중 "지원사업"을 각각 "지원사업(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포함한다)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20조의3(중소기업 지원사업의	제20조의3(중소기업 지원사업의		
효율화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	효율화) ①		
관은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			
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관리			
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			
한 현황조사, 분석ㆍ평가 및 효			
율화(이하 "효율화"라 한다)를			
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			
추진하여야 한다.			
1.・2. (생 략)	1.•2. (현행과 같음)		
2의2. 중소기업 <u>지원사업</u> 에 대	2의2 <u>지원사업(창업</u>		
한 현황조사 및 분석ㆍ평가	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		
	<u> 포함한다)</u>		
3. ~ 5. (생 략)	3. ~ 5. (현행과 같음)		
6. 중소기업 <u>지원사업</u> 에 대한	6 <u>지원사업(창업중소</u>		
만족도 조사	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포함		
	<u>한다)</u>		
7. (생 략)	7. (현행과 같음)		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		